

무역상무학회지 제31권  
2006년 8월 pp.3~25

논문접수일 2006.08.01  
논문심사일 2006.08.02  
심사완료일 2006.08.09

## CISG 제78조(延滯利子 請求權)에 대한 考察

金泰京\*

- 
- I. 序論
  - II. CISG 제78조의 제정목적 및 준거법 선택
  - III. PICC 및 PECL과의 비교
  - IV. CISG 법률공백의 보충 가능성
  - V. 結論
- 

### I. 序論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은 UN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제정하여 1980년 4월 11일 62개국 대표가 참석한 Vienna의 UN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1988년 1월에 발효되어 2006년 1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sup>1)</sup>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년 2월에 UNCITRAL 사무총장에게 CISG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제99조 제2항<sup>2)</sup>에 의거 2005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

\*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 팀장

1) <http://www.cisg.law.pace.edu/cisg/countries/cntries.html>

2) CISG 제99조 제2항 “어느 국가가 제10번째의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당초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되 국가간의 상이한 사회적·경제적 및 법률적 제도를 참작하는 통일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공헌하며 또한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제정과정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주의법계까지 수용하려 하였으므로 법계간의 타협의 산물이 되었으며, 따라서 법계간 타협하기 어려운 문제나 각 국가에서 강행법규를 두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CISG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자세하게 규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체약국간의 거래나 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실제 이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이 명료하지 않거나 CISG상에 관련 조항이 없어 법률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sup>3)</sup>

연체된 금액의 이자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 제78조<sup>4)</sup>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있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다면 피해당사자는 추가적인 손해를 겪게 될 뿐 아니라 계약 위반당사자로서는 거꾸로 지급이 되었어야 했던 금전을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적절한 이자지급규칙은 피해당사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자 나아가 자발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이라 한다)도 CISG 제78조와 유사한 규정<sup>5)</sup>을 두고 있고, 국제계약법의 법률적 공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UNIDROIT 원칙(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PICC”라 한다)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sup>6)</sup>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체이자 청구권과 관련한 연구도 주로 통일법인 CISG의 법

---

가 기탁된 이후에 본 협약을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에, 본 협약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 편을 제외하고는, 본 조 제6항 소정의 제한하에 동 국가의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에 동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와 UNIDROIT Principles의 내용상 차이와 상호 관계”, *국제상학* 제15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pp.86-87.

4) CISG §78 “If a party fails to pay the price or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the other party is entitled to interest on it,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for damages recoverable under article 74.”

5) PECL 제9.508조가 해당

6) PICC 제7.4.9조가 해당

률상 공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PECL 또는 PICC과의 상이 점 등을 단편적으로 비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CISG를 보충해 줄 수 있는지와 이자율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치되는 견해가 없고, 정확히 어느 시점에 그러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등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CISG 제78조의 제정목적, 이자율 통일을 위한 일련의 노력 및 법률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국내법의 준거 실태 등을 소개함과 아울러, 실제 국제 금융시장 등에서 자금거래시에 발생하는 연체이자와 적용시점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이자청구권 발생시점 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자율결정 등에 있어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PICC와 PECL의 대체가능성 등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II. CISG 제78조의 제정목적 및 준거법 선택

### 1. 제78조의 제정목적

CISG 하에서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지급이 연체된 금액에 대한 이자청구권은 제78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자 문제는 CISG 입안과정에서 어떠한 실질적 합의도 도출되지 아니한 사안중의 하나이다.

CISG 제78조는 “일방이 대금 기타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제74조하에서 회복가능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자청구권은 인정하되 어떠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사실 제78조는 다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해결상태로 남겨둔 채 일반적인 용어로 공식화되었는데, 즉 ①이자율, ②계약위반 당사자의 불이행이 제79조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이자발생 이전에 연체금액이 확정되어야(liquidated) 하는지 여부, ④기일도래된 손해액에 대하여도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⑤복리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항으로 이자관련 사항을 일부라도 언급한 이유는, 만약 이자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면 CISG에 있어 뜻하지 않는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즉 일부 법제에서는 이자의 지급을 손해배상의 일면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 만약 CISG에서 이자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이 없이 단지 손해배상(제74조~제77조)에 관한 규칙만을 규정한다면 이자의 회복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78조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려는 것이다.<sup>8)</sup>

제78조에 따르면, 이자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해하지 않으므로, 피해 상대방으로서는 손해배상이나 이자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기본적 손실을 보상받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피해 상대방은 제74조와 제78조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79조의 면책조건에 해당하여 일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8조에 의한 이자청구권이 적절하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9)</sup>

## 2. 이자율 공식의 통일을 위한 시도

국제매매거래에 있어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자율산정 공식이 사용되어야 하는가가 항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CISG의 전신인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협약(The 1964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ULIS”라 한다)하에서는 어떠한 불확실성도 야기하지 않았는데, ULIS 제83조<sup>10)</sup>가 연체이자의 경우 채권자 국가의 공정할인율(official

7) Sieg Eiselen, “Remarks on the Manner in which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May Be Used to Interpret or Supplement Article 78 of the CISG”(2004), para. b. <<http://www.cisg.law.pace.edu/cisg/principles/uni78.html>>

8)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466.

9) Joseph Lookofsky,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Laws-Contracts*, Suppl. 29,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159.

10) ULIS §83. Where the breach of contract consists of delay in the payment of the price, the seller shall in any event be entitled to interest on such sum as is in arrear at a rate equal to the official discount rate in the country where he has his place of

discount rate)에 1%를 더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sup>11)</sup>

CISG 입안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칙을 개발하려는 시도<sup>12)</sup>가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노출되는 상황을 경험했다.<sup>13)</sup> 고정이자율로 하자는 독일의 제안과 채무자국에서 적용되는 이자율로 하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제안<sup>14)</sup>이 모두 거부되었으며,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상업대출에 적용되는 통상적 이자율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텐마크·핀란드·그리스 및 스웨덴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기된 제안도 거부되었다. 또한 다양한 정치적·경제적·종교적인 견해는 이자율 공식에 대한 합의를 불가능하게끔 했으며,<sup>15)</sup> 이자의 징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행법규를 두고 있던 국가들은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sup>16)</sup>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UNCITRAL은 결국 협약초안에서 이자에 대한 규

business or, if he has no place of business, his habitual residence, plus 1%.

- 11) Fritz Enderlein, Dietrich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ceana, 1992. p.310.
- 12) ULIS 제83조에 기초한 UNCITRAL Working group의 1976년 협약초안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은 2요소 규칙(two-factor formula), 즉 매도인국에 서의 공식할인율에 1%를 더한 율(official discount rate + 1%)과 무담보단기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rate for unsecured short-term credit) 중 보다 높은 이자율로 청구할 권리(claim)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 13) CISG 제78조의 입법과정에 대하여는 Alan F. Zoccolillo, Jr의 "Determination of the Interest Rate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General Principles vs. National Law"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1997), pp.3~43를 참조할 수 있는데, 동 논문은 1974년 Working group의 활동, 1977년의 UNCITRAL "Sales" 초안내용, 1980년 외교회의의 경과과정 및 각국의 제안내용 등을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관련연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 14)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표한 Czechoslovakia의 경우는 당시 국내금리가 고정금리로서 산업화된 서구국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수출에 있어 잇점을 얻기 위해 채무국의 이자율로 하자는 주장을 폈다.
- 15) Franco Ferrari,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est Rates Under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24 *GA J. Int'l & Comp. L. B*(1995), pp.473~474.
- 16) 이슬람 국가들이 이에 해당(이슬람교의 성전 쿠란에서는 이자수입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하며, 이를 국가들에서의 CISG 제78조의 적용과 관련한 연구로는 T.S. Twibell의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Under Shari'a(Islamic Law): Will Article 78 of The CISG Be Enforced When The Forum Is in An Islamic State?"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Vol.9 (1997) pp.25~92가 있다. 한편 이슬람 국가들도 최근에는 이슬람법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부문에 투자하고 거기서 얻는 수익(또는 배당)을 배분하는 형태의 금융사업을 하는 등 금융부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을 삭제했다가, 2차에 걸친 특별 W/G의 구성 끝에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연체된 금액의 청구에 대한 규칙안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자를 계산하는 구체적 공식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피해당사자가 “연체된 금액(sums in arrears)에 대한 이자청구권을 가진다”는 일반적 규칙으로 대체되었다.

### 3. 이자율 결정에 대한 준거법의 선택

CISG 제78조가 이자율 결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율 결정에 대한 준거법 선택이 항상 문제시 된다. 동 제7조 제2항<sup>17)</sup>의 정신에 따라 제74조(손해산정의 일반적 규칙)에 규정된 실제손해의 배상이라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기초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이자율을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정지국의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국내법의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Honnold는 제78조의 뿌리가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의 결과로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74조의 원칙과 동일<sup>18)</sup>한 것으로 보아 제74조의 원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유일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74조가 손해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규정인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의 산정)와 제76조(시가에 기초한 손해의 산정)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들을 이자율의 문제와 연계하여 고려해야만, 미해결 문제 발생시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제2항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것이다.<sup>19)</sup> 즉, 연체이자의 개

17) CISG 제7조 제2항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또는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18) John O. Honnold, *op. cit.*, pp.465-466. 즉 지금해야 할 이자는 손해액의 평가를 통해 정해지는데, 즉 “판매자가 적시에 대금을 수령하였을 것과 동일한 위치에 판매자를 놓는 것”으로 정의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19) 예를 들어, 피해당사자(A)가 금전을 상대방(X)에게 부당하게 떼이고서 응자를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 자금을 대체했다고 가정할 경우, CISG 제75조는 A의 손해가 “대체거래” 비용을 통해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cash flow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러한 자금은 필요에 따라 일반적 성질의 금전대출(credit)이나 자본 전환(diversion of capital)에 의해 보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X의 金錢不支給으로 인한 A의 손해를 대체차입(substitute loan)을 통해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金錢不支給으로 인한 금전적손해 발생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CISG 제76조에 내재하는 원칙이 A의 손해를 금전대출의 “時價”를

념을 “대체거래비용”으로 파악하여 이자율 결정 문제를 CISG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데, 한편 이러한 견해는 제78조가 당초 의도했던 손해와 이자 사이의 구분에 대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여 여러 학자들로부터 비판<sup>20)</sup>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즉, CISG 제78조를 연체이자 청구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CISG가 이자를 손해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대륙법계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보고, 이 규정에 의거 피해당사자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계약에 따라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不支給額에 더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1)</sup>

CISG의 일반원칙에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법 규칙에 의한 국내법에 그 결정을 양보<sup>22)</sup>하게 되는데, Nicholas 등은 이자율결정에 관한 CISG의 공백은 그 결정권을 국제사법 규칙에 양보한 것으로서, 실제로 그러한 양보가 인정될 뿐 아니라 CISG 제7조 제2항에 의거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3)</sup>

일부 학자들은 CISG의 규정들이 이자청구권을 위하여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연계점도 없어 이자율 결정의 문제를 CISG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보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sup>24)</sup>

생각건대, Honnold의 주장은 적용할 국내법을 지정할 필요가 없게끔 하고,

통해 산정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Honnold, *op. cit.*, p.467 참조)

20) Ferrari, *op. cit.*, p.476.

21) Peter Schlechtrie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594

22) 독일 법원들은 CISG를 적용할 때 국제사법에 의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부 법원은 CISG 제78조의 목표가 적용가능 국내법에 의한 이자율과 동등한 최소한의 보상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일부법원은 CISG 제78조가 이 자율 산정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역사에 근거하여 국내법에의 의존이 유일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시했다.(André Coterier, “A New Approach to Solving the Interest Rate Problem of Art 78 CISG” *Int'l & Bus. L. Ahr.* 34(2000), p.34. 참조)

23) Francesco G. Mazzotta, “CISG Articles 78 and 84(1) and their PECL counterparts”(2004), para. 2-b. <<http://www.cisg.law.pace.edu/cisg/text/peclcomp78.html>>

Barry Nicholas, in Bianca &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è”, Milano, 1987. p.570.

24)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로는 Fritz Enderlein, Dietrich Maskaw, Rolf Herber, Beate Czerwenka, Ulrich Magnus, Burghard Piltz, Peter Schlechtriem, Denis Tallon 등이 있다.(Ferrari, *op. cit.*, p.475 참조)

또한 지정된 국내법의 이자에 관한 규정이 CISG의 정신에 합치되는지 여부 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손해와 이자간의 구분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제적으로 통일된 이자율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해답을 주지 못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법정지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내법의 이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준거법 결정은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법원이 이자율 문제를 CISG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결론짓는 한, 비록 제78조에서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가능한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7조 제2항에 의해서 국내법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sup>25)</sup> 실제로도 지급지의 국내법<sup>26)</sup>을 필두로 하여 채권자 혹은 채무자의 국내법 등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7)</sup>

25) Mazzotta, *op. cit.*, para. 2-b.

26) ICC 국제중재재판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CISG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결론짓고 지급지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중재판정 사례를 볼 수 있다.(ICC Award No. 7153(1992))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재재판소는 본건의 이해을 위해 제공 및 설치된 재료에 관한 계약에 CISG가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CISG는 계약의 체결 전에 Yugoslavia와 Austria(buyer 및 seller의 국가)에 발효되었고, 더구나 계약의 조문에서 서비스에 관한 조항이 매매조항에 종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계약은 CISG의 적용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CISG가 적용되면 계약을 위반한 seller가 대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만 한다. CISG가 적용 가능한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재재판소는 국제사법(지급지의 법률)의 규칙에 따라 적용 가능한 국내법률을 적용했다. 계약이 지급지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은 CISG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물품의 인도장소를 지급지로 지정했다.”

27) 실제로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국내법들이 이자율 결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Hans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2nd ed. Sweet & Maxwell, 2002, p.169. 참조).

- 지급지의 국내법: ICC award no. 7153 (1992), (1992) J.D.I. 1005;
- 채권자의 국내법: LG Stuttgart, September 5, 1989, (1990) I.P.Rax. (1991) 317; LG Frankfurt, September 16, 1991, (1991) R.I.W. 952; KG Berlin, January 24, 1994, (1994) R.I.W. 683; OLG München, March 2, 1994, (1994) R.I.W. 545; ICC award no. 7197 (1992), (1993) J.D.I. 1028;
- 손해 발생지의 국내법: LG Aachen, April 3, 1990, (1990) R.I.W. 491;
- 계약의 준거법: AG Oldenburg, April 24, 1990, (1991) I.P.Rax. 336; LG Hamburg, September 26, 1990, (1991) I.P.Rax. 400; Belgian Cass, November 29, 1990, (1990) Rechtskundig Weekblad 1270;
-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국내법: OLG Frankfurt, June 13, 1991, (1991) R.I.W. 591; OLG Frankfurt, April 20, 1994, (1994) R.I.W. 593.

### III. PICC 및 PECL과의 비교

#### 1. PICC 관련조항과의 비교

UNIDROIT는 1994년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 1994 (PICC 1994)”를 채택한 바 있고, 최근 2004년 4월에는 이를 수정한 “PICC 2004”를 공표한 바 있다.

PICC는 기존의 상관습법(*lex mercatoria*)과는 달리 그 내용이 자세하고 명료하여 적용범위도 CISG와 같이 물품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거래를 포함한 각종의 국제상사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sup>28)</sup> PICC는 비록 조문의 형식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법조문의 체계(소위 ‘black letter rule’)를 갖추고 있으나,<sup>29)</sup>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국제조약도 아니고 각국에 대하여 국내법화를 구할 어떤 강제적 장치를 갖춘 것도 아니며,<sup>30)</sup> 단지 합리성과 설득력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의 기본원칙을 집적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PICC를 흔히 “국제상사계약법의 再記述(Restatement)”<sup>31)32)</sup>이라고도 한다.

28)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와 UNIDROIT Principles의 내용상 차이와 상호 관계”, 국제상학 제15권 제2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p.87.

29) PICC의 각조는 조항(Black Letter Rule), 주석(Comment) 및 例說(Illustration)로 구성된다.

30) PICC에 대하여도 한 때 이를 조약과 같은 법적구속력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Franco Ferrari, “Defining the Sphere of Application of 1994『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ulane Law Review*, Vol.69, 1995, p.1228. 참조).

31) E. Allan Farnsworth,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Baltimore Law Review*, Vol.26, 1997, p.2. Michael Joachim Bonell,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Why? What? How?”, *Tulane Law Review* Vol.69, 1995, p.1126.

32) 미국법의 “Restatement”은 美國法律協會(American Law Institute)가 법률 각 분야에서 현행법 중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주법이나 판례법을 선택하고 이를 모델로 하여 해설·이론 및 비판을 첨부하여 再記述(restate)함으로써 사법분야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으로,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실제 법해석에 있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며 판결에도 자주 인용된다.(오원석·심윤수, “UNIDROIT Principles 2004의 변경·신설내용의 개관”, 무역상무연구 제2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p.42; 이상윤, “英美法” 박영사, 1997, pp.84-85. 참조).

UNIDROIT가 소개한 바에 따르면, PICC의 목적은 동 원칙이 적용될 국가의 법적 전통이나 정치·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균형잡힌 一團의 규칙을 설정·제공하는 데 있다.<sup>33)</sup> PICC 제1.6조 제1항에서는 “본 PICC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본 PICC의 국제적 성격과 그 적용의 통일을 증진할 필요를 포함하여 본 PICC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ISG와는 달리 PICC에서는 이자율 산정방식을 자세히 규정(제7.4.9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CISG 제78조를 둘러싼 논쟁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PICC의 규정들은 앞서 언급된 미해결된 이슈들<sup>34)</sup>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sup>35)</sup> 아울러 일부 중재판정부나 법원도 이자판정에 대한 특정의 접근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PICC를 인용(그러한 케이스에서의 PICC의 사용이 정당한지 여부는 다음 장에서 판단해 보기로 한다)하여 왔으며,<sup>36)</sup> 주석가들에 의해서도 인용되어 왔다. 따라서 PICC의 관련 조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한다.

제7.4.9조(金錢不支給에 기한 이자) ①'당사자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동 금전이 지급되었어야 한 때부터 실제 지급시까지의 동 금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당해 不支給의 면책여부는 묻지 않는다.

②'그 이율은 지급지에서 당해 지급통화의 우량금전차용인들에게 널리 적용

33) 오원석·최준선·허해관 共譯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xiii.

34) 즉 ①이자율 ②면책사유 해당시의 이자 ③연체금액의 사전확정 ④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 ⑤복리이자 등이다

35) Michael J. Bonell 교수는 PICC 제7.4.9조 제1항과 제2항이 CISG 제78조의 공백을 보충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J. M. Perillo, A. Garro, K. Boele-Woelki, R. Goode, K. Bacher, F. Ferrari, P. Perares Viscasillas)의 논저와 이론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Michael J. Bonell,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3rd ed., Transnational Publishers, 2005, pp.320-322 참조)

36) ICC Award No. 8128 (1995), 8769 (1996.12); Vienna Arbitration Proceeding SCH-4328 (1994), SCH-4366 (1994); Supreme Economic Court of the Republic of Belarus No. 7-5/2003 (2003.5) 등이 그 예다. 이러한 판정이나 판결들은 모두 CISG 제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PICC 제7.4.9조를 우선 적용하였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ICC Award No. 8908 (1998.9)은 PICC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국제판례법을 기초로 하여, 해당 계약통화가 달러이고 계약당사자가 유럽인임을 들어 “3개월 LIBOR 금리+1%p”를 적용 이자율로 결정함으로써 PICC에 근접(정확히는 ULIS 제83조와 일치)하는 입장에 섰다.

되는 평균은행단기대출 이자율이나, 지금지에 그러한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통화[를 법화로 하는] 국가에서의 그러한 이자율로 한다. 그러한 두 장소 모두에서 그러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율은 당해 지급통화[를 법화로 하는] 국가의 법이 정하는 적절한 이율로 한다.

③'金錢不支給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손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는 그러한 추가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ICC 제7.4.9조 제2항은 지급지에서의 지급통화에 적용되는 우량금전차용인에 대한 평균은행단기대출 이자율(the average bank short-term lending rate to prime borrowers)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급통화 국가에서의 동일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자율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지급통화 국가의 법률에 의한 적정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해결된다. PICC 공식 해설서의 해당 조항 주석에서도 이 해결책이 국제무역의 수요에 가장 적합하고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임을 자평하고 있다.<sup>37)</sup>

PICC 제7.4.9조 제1항은 비록 不支給이 면책되더라도 당사자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전을 지불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자는 지불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만기가 된 손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다루는 특별규정을 포함하는데, 제7.4.10조는 만약 계약이 그러한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 한, 일방은 불이행 때로부터 비금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두 가지의 명확한 원칙을 포함하는 바, 즉 손해배상의 지급은 불이행 때부터 의무화 되고, 손해배상은 그것이 발생했을 때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CISG나 PICC는 ULIS 초안과는 달리 당사자가 연체금액에 대한 복리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체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있다. CISG에 따르면 복리이자에 대한 아무런 청구권도 없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이자율을 규율하는 국내법에 의해 복리이자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면 당사자는 경우에 따라 복리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CISG에 의해 규율된다.

---

37) 오원석 外 共譯, 전게서, p.272.

## 2. PECL 관련조항과의 비교

PECL<sup>38)</sup>은 유럽 역내에 적용되는 계약법을 통일할 목적으로, PICC처럼 미국법의 Restatement 방식을 도입하여 현행 유럽연합(EU) 내의 계약법을 再記述한 것이다. 이 점에서 PICC와 유사하며, 민간단체가 제정한 계약법 모델로서 임의법규에 속하므로 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sup>39)</sup> 그러나 PECL이 명시적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중재기구나 법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sup>40)</sup> 상사관계에 한하지 않고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PECL에서는 PICC 만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CISG와는 달리 이자율 산정방식을 상세히 규정(제9.508조 제1항)하고 있다. PECL 제9.508조 제1항은 단순히 “금전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채권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로부터 당해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01조에서는 제8.108조(장해에 의한 면책)에 의한 면책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sup>41)</sup>함으로써 CISG(제78조 및 제79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PECL은 제9.508조 제1항 후단에서 CISG에는 없는 이자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자율은 지급지에서의 계약상 지급통화에 따라 우량금전차용인(prime borrowers)에 대하여 널리 적용되는 상업은행의 평균단기대출이자(the average commercial bank short-term lending rate)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PICC와 함께 이 PECL 제9.508조가 CISG 제78조의 해석에 있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8) 유럽의회는 1989년 5월 26일 결정을 통하여 이사회(Council)와 위원회(Commission)에 통일 유럽민법전(European Civil Code)의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위원회는 민간단체인 유럽계약법위원회(The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Lando 위원회)에 계약법의 일반원칙을 제정할 것을 의뢰하였다. Lando 위원회는 1995년 5월 유럽계약법원칙(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제1부를 발표하였고, 이어 1998년 11월에 제2부를 발표하였다.(최준선, “國際去來法”, 삼영사, 2005, p.65. 참조)

39) PECL 제1.01조 제2항

40) PECL 제1.101조 제3항 및 제4항

41) PECL 제8.101조 제2항 “당사자 일방의 불이행이 제8.108조에 의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특정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하고, 제9장에서 정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lt; 표 1 &gt; CISG와 PECL의 비교

CISG 제78조	PECL 제9.508조 제1항
일방이 대금 기타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제74조하에서 회부가능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러한 금액에 대한 利子를 청구할 수 있다.	금전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채권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로부터 당해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이자율은 지급이 이행되어야 할 장소에서의 계약상 지급통화에 따라 우량금전차용인에 대하여 널리 적용되는 상업은행의 평균단기대출이자로 한다.

사실 이자청구권과 관련하여 CISG와 PECL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율산정 규정이고, CISG가 이러한 규정을 두지 못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 대표들의 의견 불일치로 그에 관한 합치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심지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석자들(commentators) 조차도 의견이 불일치하고<sup>42)</sup> 대다수의 법원들도 각기 다른 국제사법 규칙을 통하여 해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PECL에서는 CISG 뿐 아니라 PICC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연체이자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명기하고 있는데, 제9.508조 제1항에서 “채권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로부터 당해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the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interest on that sum from the time when payment is due to the time of payment)”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문리상 해석에 의존할 경우 지급기일에는 채무자의 기한이익과 채권자의 연체이자 청구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듯 보이나, “금전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If payment of a sum of money is delayed)”로 한정하고 있어 금전지급의 연체가 확정된 시점, 즉 원금상환 약정일 의일부터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의 은행들의 업무관행을 참고하여 보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시점과 그 청구권 발생일은 기한이익을 상실하

42) CISG 제78조와 관련한 주석자들과 중재판정부 및 법원들의 의견 불일치 상황에 대해서는 Francesco G. Mazzotta의 “CISG Article 78: Endless disagreement among commentators, much less among the courts”(2004) <<http://cisgw3.law.pace.edu/cisg/biblio/mazzotta78.html>>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등 자료에는 16개 주요국가와 ICC의 중재판정 및 법원판례 동향이 잘 정리되어 있고, CISG 제78조가 성립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관련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게 되는 “이자납입 또는 원금상환 약정일 익일”부터<sup>43)</sup>임을 알 수 있으며, 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자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에 그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부과할지 여부는 당해 대출계약서(facility agreement)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으로 CISG 제78조를 PICC 및 PECL과 개별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을 청구권 발생과 이자율 등 구체적인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데, 주로 이자율 산정에서 큰 타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3) 미국 은행들의 경우에는 은행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대출금 상환 약정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일정비율의 late charge(일반적으로 상환약정 금액의 2%)를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다.

&lt; 표 2 &gt; CISG, PICC 및 PECL 규정의 상호 비교

구 분	CISG §78	PICC §7.4.9	PECL §9.508
청구권 발생사유	대금 기타 연체된 금액의 부지급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전의 부지급	금전 지급의 지체
청구권 발생시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이자청구 범위	(규정 없음)	금전이 지급되었어야 한 때부터 실제 지급시까지	(규정 없음)
이자율 산정	(규정 없음)	<p>지급지에서 당해 지급통화의 우량금전차용인들에게 널리 적용되는 평균은행단기대출 이자율</p> <p>지급지에 위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급통화를 법화로 하는 국가에서의 해당 이자율</p> <p>위 두 장소 모두에서 해당 이자율이 없는 경우, 당해 지급통화를 법화로 하는 국가의 법이 정하는 적정 이율</p>	<p>지급지에서의 계약상 지급통화에 따라 우량금전차용인에 대해 널리 적용되는 상업은행의 평균 단기대출이자</p>
복리이자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속여부	존속	존속	존속
부지급의 면책여부	§79에서 규정	직접 규정	§8.101에서 규정

## V. CISG 법률공백의 보충 가능성

국제간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문제를 모두 제정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CISG도 법률공백의 보충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을 두고 있다. 동 조항은 “CISG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문제로서 동 협약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일반원칙”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사법원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도 다양한 견해간의 타협으로 뒤늦게 조문화가 되었는데, ULIS 제17조<sup>44)</sup>에서 규정하던 “일반원칙” 외에 국제사법원칙 즉 “개별국가의 국내법”이 추가된 것이다. ULIS의 “일반원칙” 조문은 UNCITRAL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영미법계 뿐 아니라, 제정법의 상세화와 엄격한 법해석을 강조하는 대륙 법계 국가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이 있었다.<sup>45)</sup> 결국 1970년의 W/G과 1980년의 외교회의를 거치면서 CISG 제7조 제2항의 앞부분에 ULIS 제17조의 “일반원칙”을 옮겨 적고 이를 반대하는 측을 위하여 동항 뒷부분에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 국제사법의 규칙을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sup>46)</sup>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앞서 국제거래법 해석의 일반원칙으로 언급한 PICC나 PECL이 이자율 결정에 대한 CISG 제78조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CISG 제78조의 법률공백 보충은 제7조의 입법원리에 기초하여 검토되어져야만 하는데, 주석자들의 견해는 다소 나뉘고 있다. 특히 이자율에 대한 공백과 관련하여 주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의 차이는, 이자율이 CISG에 의하여 규율되기는 하지만 CISG 내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lacuna praeter legem(규범외 공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자율 문제가 CISG 적용으로부터 배제되는 즉 “lacuna intra legem(규범내 공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sup>47)</sup> 앞

44) ULIS §17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e present Law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therein shall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e present Law is based.”

45) Honnold, *op. cit.*, p.103

46) 이러한 결정은 각국의 법원들이 성급하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반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도록 한 절충방안이다.(Loc. cit., p.103 참조)

47) Ferrari,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est Rates Under the 1980 Vienna Sales

견해의 주창자들은 CISG가 통일법의 제정에 그 전반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sup>48)</sup> 뒤 견해의 지지자들은 제78조의 입법역사를 제78조 해석에 있어 지배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49)</sup>

한편 제78조 등의 입법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사법 규칙이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그 적용 가능한 이자율은 당해 국내법이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은 불가피해 보인다.<sup>50)</sup> 또한 이자청구권은 CISG의 적용범위내에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이자율의 결정은 그 적용범위 밖에 있어 각각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결국 PICC나 PECL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주석자들과 법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나 법원이 CISG가 정한 원칙에 따르지 않고 다른 특별한 방법을 적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PICC가 CISG를 보완하는 형태로 내려진 중재판정 사례<sup>51)</sup>도 일부 있기는 하나, 이러한 판정들은 관련원칙에 비추어

Convention," p.475

48) 실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는데, 그 주장하는 바를 종합하면 대체로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접근방법에 불구하고, 판결 등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추세는 당해 사건을 CISG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내법에 의해 공백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Honnold 등 일부 학자와 몇몇 판례에서는 이자율이 불이행 당사자의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근거해야 한다며 체권자의 영업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데(Honnold, Staudinger, Magnus), 이러한 접근방법은 어떠한 사건의 경우 실제손실이 제74조에 의거 청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78조를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둘째, 다른 학자들은 제78조가 불합리하게 수령한 이득에 대해 보상토록 하는 것을 목표 (즉 우리나라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로 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이자율 결정은 채무자의 영업장소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ehr, Corterier, Liu).

세 번째 접근방법으로서, 이자율을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아닌 채무지급 통화에 연계시켜야 한다는 보다 객관적인 접근방법이 제안되고 있기도 하는데(Belgium District Court Veurne), 이러한 접근방법은 유로화와 같이 단일국가가 아닌 여러국가에 연계되어 있는 통화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접근방법은 일반원칙에 따른 것으로 즉 지급지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가능 이자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Koneru, Zoccolillo).

49) Eiselen, *op. cit.*, para. d.

50) *Loc. cit.* para. d.

51) 1996년 12월에 내려진 ICC 중재사건(제8769호)에서 신청인은 CISG 제78조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권리를 획득했다. 중재판정부는 CISG가 구체적인 이자율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아, "합리적인 상사이율(PICC 제7.4.9조 제2항 참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재판정금액 통화인 오스트리아 실링(Austrian schilling)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자율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또한 ICC 중재사건 제8331호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ICC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당화되기 어려운 예외적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PICC나 PECL이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많은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이자율 결정을 CISG의 적용범위 밖으로 남겨두려는 CISG 입안자의 명확한 의도에 따른 결과로 인해, 그것들이 CISG 78조의 현재규정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래의 CISG의 발전 또는 변화에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이자율산정 방식을 CISG 내용에 삽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나 제78조 규정을 새로이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PICC 등의 공식이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V. 결론

국가 간 교역의 확대에 따라 국제적인 상거래법을 통일하고 조화시킴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두 가지의 기술이 채택되었는데, 즉 국제사법규칙의 통일과 실체법의 통일 및 조화이다. 국제무역관련 법규의 통일은 UNCITRAL이 주도 하였는데, 바로 UN통일매매법이라고 통칭하는 CISG의 탄생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CISG는 그 입안과정에서 다수 법계와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조정과 타협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미해결 상태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연체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CISG 제78조는 가장 민감한 내용인 이자율결정 방식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이는 이자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CISG 입안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국 CISG 제7조의 기본원칙에 의거 동 내용을 각국의 국제사법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이자율 결정에 관하여 판결 또는 판정하고자 할 경우 그에 적용되는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해당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야만 하고, PICC나 PECL과 같은 임의법규는 비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보다 합리적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거법으로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거래 당사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계약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당해 거래를 위한 상세한 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CISG의 전신인 ULIS에서는 이자율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고, CISG 입안을 위한 W/G 등에서 이자율 결정방식 도입을 위한 노력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PICC나 PECL 정도의 보다 구체적인 규정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제무역법규의 통일이라는 CISG의 탄생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경제의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가 촉진되어 cross-border 교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모든 거래가 직간접으로 대금결제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무이행을 담보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자율 관련규정의 통일 및 강행규범화는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 參 考 文 獻

-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와 UNIDROIT Principles의 내용상 차이와 상호관계”, *국제상학* 제15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 · 심윤수, “UNIDROIT Principles 2004의 변경 · 신설내용의 개관”, *무역상무연구* 제2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 · 최준선 · 허해관 共譯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 최준선, “國際去來法”, 삼영사, 2005
- Alan F. Zoccolillo, Jr., “Determination of the Interest Rate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General Principles vs. National Law”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1997.
- Allan Farnsworth,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Baltimore Law Review* Vol.26, 1997.
- C. M. Bianca & M. J.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é”, Milano, 1987.
-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Joseph M. Lookofsky,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Laws-Contracts*, Suppl. 29,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 Francesco G. Mazzotta, “CISG Article 78: Endless disagreement among commentators, much less among the courts”, 2004.  
<http://cisgw3.law.pace.edu/cisg/biblio/mazzotta78.html>
- “CISG Articles 78 and 84(1) and their PECL counterparts”,  
<http://www.cisg.law.pace.edu/cisg/text/peclcomp78.html> 2004.
- Franco Ferrari, “Defining the Sphere of Application of 1994『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ulane Law Review*, Vol.69, 1995.
- ,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est Rates Under the 1980 Vienna

- Sales Convention," 24 GA. J. Int'l & Comp. L. B, 1995.
- Fritz Enderlein, Dietrich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ceana, 1992.
- Hans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2nd ed., Sweet & Maxwell, 2002.
- Michael Joachim Bonell,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3rd ed., Transnational Publishers, 2005
- \_\_\_\_\_,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Why? What? How?", Tulane Law Review Vol.69, 1995.
- Peter Schlechtrie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Sieg Eiselen, "Remarks on the Manner in which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May Be Used to Interpret or Supplement Article 78 of the CISG", 2004. <<http://www.cisg.law.pace.edu/cisg/principles/uni78.html>>

## ABSTRACT

### A Study on Article 78 CISG: Interest on Sums in Arrears

Kim, Tae-Gyeong

This study focus on interest for arrears and filling of the gaps left in Article 78 of CISG. In the case of CISG, Article 78 provides for interest any time a payment under a contract is untimely, but does not specify a particular rate of interest or a method to determine such a rate. This issue did not cause any uncertainty under ULIS, the CISG's antecedent, since Article 83 of ULIS provided for 1% p above the official discount rate in the creditor's country.

Lacking any CISG general principle as well as any indication by the very same CISG, one can only conclude that the matter must be deferred to the domestic ru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ually, resorting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not only admissible, but expressly required by Article 7(2).

In the interpretation and filling of the gaps left in Article 78,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of opinion especially amongst commentators on whether the gap is a lacuna praeter legem, i.e., one being governed by, but not expressly settled in the CISG, or whether it is an issue falling outsid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ISG, i.e. a lacuna intra legem. The protagonists of the former view lay emphasis on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CISG, namely to create a uniform law, whereas the supporters of the latter view refer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Article 78 as the dominant principle in interpreting Article 78.

Some authors believe that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rate of interest is not dealt with by CISG and it is, therefore, governed by the applicable domestic law, which is the subsidiary law applicable to the sales contract, since "no special connecting points seem to have developed for the

entitlement to interest."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case law, it seems correct to conclude that the interest rate is not determined by CISG and that courts normally determine it according to their own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le CISG Article 78 expressly does not deal with this issue, PICC Article 7.4.9 and PECL Article 9.508, on the other hand, set forth a precise method for computing interest. Although a method like the one set by PICC may be useful and may encourage uniformity, it still cannot be used under the CISG. The PICC or PECL formula may, however, be a very good starting point in a de jure condendum analysis when a new Article 78 will be drafted, if an interest rate method will ever be embodied in the tex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Key Words : Article 78 CISG, Interest on Sums in Arrears, Gap-filling